

<손해보험분쟁조정 사례>

잔존물(殘存物) 제거비용의 의미 및 범위

- 불타고 남은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인가 -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1. 머리말

우리나라 상법은 화재보험에 관하여 5개의 조문을 두고 있으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제683조),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8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과 관련하여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의미에 관해 화재보험보통약관은 보험목적이 화재로 입은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화재보험약관에 의하면 그 외에도 잔존물 제거비용을 포함하여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인지의 여부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화재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대법원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¹⁾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보험목적물의 손해와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손해, 예컨대 화재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영업상의 손실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자 할 것이고, 특히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도 여타의 비용손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라 하겠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상범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

甲은 '97. 1. 12 자신의 공장건물과 야적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기간은 1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10억 원, 5억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잔존물 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하였다. 그 후 '97. 2. 27 동 야적장에 원인불명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그 곳에 쌓아둔 야적 동산인 압축폐지 등이 소실되었고, 그로 인해 약 5,000톤 가량의 야적 동산 잔존물이 발생하였다. 보험사는 '97. 3. 31 甲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금으로 야적 동산에 대한 보험금 2억 원, 잔존물 제거비용의 일부 3,000만 원(현장정리 및 상차비용)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97. 4. 7 甲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甲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가 잔존물 제거비용 중 일부만 인정한데 불복하여 '97. 5. 6 소송을 제기하고, '97. 10.부터 '98. 4. 사이에 불에 타거나 불에 타다 만 상태로 쌓여있는 화

1) 대법원, 1999.5.11 선고, 99다8155 판결 등

재 잔존물을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류,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하면서 그 덤프트럭 운송비 등의 비용으로 합계 3억원(덤프트럭 운송비 1억원, 선별비 5천만원, 상차비 5천만원, 매립률 운반비 5천만원, 소각잔재물 운반비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보험사는 甲에게 잔존물 제거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가?

3. 문제의 제기

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궁극적인 부담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위 사안에 적용되는 화재보험약관 잔존물 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을 보면 잔존물 제거비용이 어떤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와 그 범위에 관해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잔존물 제거비용의 부담자

가. 문제점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특별한 이전절차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상법 제681조) 따라서 보험목적물의 전부멸실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 일용 잔존물에 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귀속되어 보험자는 그 잔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사법상,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잔존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오히려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보험자에 속하므로 잔존물에 대한 공법상, 사법상의 의무도 피보험자에게 속하게 된다. 결국 잔존물 제거비용은 잔존물의 가치가 남아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의 잔존물에 대한 대위 포기로 피보험자가 공법상, 사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의 잔존물 대위에 관한 요건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나.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1) 의의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란 보험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전부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上位)를 취득한다(상법 제681조)는 것으로, 예컨대 화재보험에서의 타지 않은 석재, 기계보험에서의 파손된 기계, 해상보험에서의 침몰선 등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를 말한다.²⁾

2)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판, 571면

(2) 보험위부³⁾와 비교

보험자 대위제도의 한 형태인 잔존물 대위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상법 제710조)와 유사한 면이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우선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잔존물 대위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에 그 목적이 있으나, 보험위부는 손해사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둘째는 요건상의 차이이다. 권리이전을 볼 때 잔존물 대위에 있어서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이전이 이루어지지만, 보험위부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의 효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다. 마지막으로 잔존물 대위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 이상을 대위하지 못하지만, 보험위부는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지급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⁴⁾

(3) 요건

(가)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전부멸실되어야 한다. 즉, 분손인 경우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잔존물에 대한 제거비용도 당연히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목적의 전부멸실이란 잔존물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서도 전손을 인정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본다.⁵⁾

(나)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보험자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목적에 전손이 생겼고, 보험자가 해당보험금 및 기타 보상급여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된다.⁶⁾ 이때 보험금액의 전부지급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지급할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및 기타의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효과

(가) 보험자의 권리 취득

전손으로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관하여 종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보험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잔존물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 받은 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권리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이전으로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나 물권변동절차(인도 등)를 요하지 않는다.

(나) 일부 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

3) 위부(委付)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 내지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보험사전, 한국보험학회)

4) 김성태, 보험법강론, 442~443면

5) 정찬형, 상법강의(하), 571면

6)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643 판결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1조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하여 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다) 잔존물에 대한 의무부담과 대위권 포기

보험자는 대위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인 잔존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잔존물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위권 취득으로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상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본다.⁷⁾

(라) 대위권 포기의 시기

대위권 포기의 시기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보험금 지급 전후를 불문하고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 보험금 지급 후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제한설적 입장이 있다.⁸⁾ 대위권의 포기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보험자가 포기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과정에서 잔존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때 보험자는 잔존물이 이익이 될 것인지 불이익이 될 것이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 포기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⁹⁾ 보험금 지급 후에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법 제68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잔존물에 대한 공법상, 사법상의 의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등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¹⁰⁾

5. 잔존물 제거비용 약관

가. 국내 화재보험약관

(1) 1997. 10. 1 이전의 화재보험약관

이 당시 화재보험약관은 잔존물 제거비용에 관하여 특별약관을 두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동 특약에 따른 별도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동 특약의 내용을 보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제1조)하고,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화재보험 보통약관 16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었다.

(2) 1997. 10. 1 이후의 화재보험약관

'97. 10. 1 이후 화재보험약관에 의하면 잔존물 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을 보통약관으로 흡수하면서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한 정의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¹¹⁾ 동 약

7) 현행 화재보험약관 제22조(잔존물)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보험금 지급 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견해(채이식, 562면)와 지급 이후에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양승규)

9)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2조(잔존물)

10) 김성태 교수님도 피보험자의 이익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보험금 지급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김성태, 보험법강론, 445면)

11)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2항,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

관은 '97. 10. 1 이전 약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를 상차비용까지 한정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 영문약관¹²⁾

동 영문약관에 의하면 잔존물 제거 특별약관(Debris Removal Clause)이 있으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제거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잔존물제거 특약을 첨부했을 경우 보험금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가 발생하여 800만원을 지급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잔존물 제거비용을 부담하며, 손해가 발생하여 1,00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한 잔여 보험금액이 소진되어 없으므로 동 제거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금 지급 후의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제거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피보험자가 동일건물에 대하여 각각 2개의 보험금액 1,000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증권 A는 잔존물 제거 특약을 첨부하였고, 증권 B는 동 특약이 없다고 할 경우라도 증권 A에서는 손해 후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1/2만 지급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¹³⁾

이와 같은 해석은 보통약관 이외에 특별약관에 첨부된 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시켜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가입자에게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해석은 보통약관이 담보하는 손해의 종류를 추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보상위험의 추가와 함께 보험가입금액의 확장조치도 명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6.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및 범위

개정 전 잔존물 제거비용 특별약관에 의하면 잔존물 제거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존물 제거비용이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을 물론 잔존물 처리를 위한 운반 및 처리비용도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그 문언에서 특별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위 특별약관을 삽입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실제손해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해석원칙을 고려해 볼 때, 잔존물에 대한 현장

소비용, 상차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F.O.C(F) Policy

13) 강원희, 노상봉 공저, 화재·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범론사(1989) 253면

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¹⁴⁾ 잔존물 제거비용 특별약관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제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해석의 원칙 및 동 특별약관의 보상약관 조항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화재보험약관을 개정하여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잔존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은 잔존물 제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약관의 경우 규정체계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문제는 별 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7.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시기

일반적으로 각 개별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화재보험약관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을 두고 있는데, 동 약관조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이행시기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해 우리 하급심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사고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⁵⁾ 따라서 동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자연손해금(연 6%)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사안의 해결

이 사안에 적용되는 당시 화재보험약관에서는 협행약관에서와 같이 별도로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는 바,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잔존물 제거비용이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하면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 상차비용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매립장까지의 운반비용, 소각 등 처리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해석원칙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면서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를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따를 경우 동 사안에서 보험자는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화재보험약관의 규정내용을 기초로 하여 외국의 관련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14) 대법원 2001.6.26 선고 99다27972 판결

15) 서울고법 1999.4.9 선고, 98나5724

9. 여론

현행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개정 전 잔존물 제거비용 특별약관을 흡수하여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통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흡수하여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당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목적물에 대하여 전손(1,000만원)이 발생하고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도 1,000만원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1,000만원만 보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비용손해를 별도로 예상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보험자가 화재사고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전보받지 못하게 되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통약관의 보상손해에서 떼어내어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되 보험가입금액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현행 화재보험 보통약관을 보면 오염물질에 대한 해체비용, 상차비용은 잔존물 제거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약관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